

고성군 금연·금주구역 지정 조례안

(의안번호 제1201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1. 4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부일자 : 2010. 1. 4 | |
| 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10. 1. 13 |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 |

2. 제정이유

- 군민의 휴식공간인 주요공원 등을 흡연과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없는 청정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말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금연·금주 권장구역 지정 및 금연시설 지원사항을 정함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금연·금주 교육지원 및 계도에 관한사항을 정함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군민의 정책참여 유도 및 시민단체 참여사항을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마. 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정함(안 제9조)
- 바. 건강환경조성 및 활동에 대한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786호(2009. 10. 6 ~ 2009. 10. 25.)
- 의견제출사항

- 나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」 제2조제3호
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안 제 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
- 안 제 2조에서는 금연·금주, 권장지역 등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
-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금연·금주 권장구역지정과 안내판설치, 시설내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설에 대한 일정한 표지를 부착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과 금연·금주에 대한 교육지원 및 계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군민정책 참여 방안과 자율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과 건강 환경조성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○ 본 제정 조례 안은 군민의 휴식공간인 주요공원을 금연·금주,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,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율적인 실천을 지원함으로서,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써, 필요성 및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○ 그러나 현행 “국민건강 증진법” 상 지방자치단체는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은 없고, 권장구역 지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, 따라서 금연·금주, 청정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문 : 금연, 금주 구역인 남산이나 놀이터에서 흡연, 음주를 하는 사람이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?

- 답 : 시장 군수가 자율적으로 권장구역을 정해서 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공원이나 청정 지역내 시설물이나 자연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계도 및 지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문 :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할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?
- 답 : 현재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.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안내판 등을 준비하여 설치 할 부분입니다.

7. 토 론 :

8. 심사결과 :

- 2010. 1.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